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93 발의연월일: 2024. 12. 30.

발 의 자:이양수・박덕흠・정희용

이인선 • 이종욱 • 김선교

권영진 • 배준영 • 서천호

서범수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혼인 중의 여성이 자녀를 임신한 때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이른바 '친생추정의 법리'를 채택하고 있음.

친생추정의 법리는 가족관계의 조속한 확정과 안정에 기여한다는 순기능이 있으나, 외관만으로 생부를 확정하기 어려웠던 과거와는 달 리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친생자 관계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현재에는 과거처럼 엄격히 적용할 필요성이 없음.

이에, 공인된 기관에서 과학적 방법으로 생부임을 증명하면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모의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경우라면 소송으로써 다툴 수 있도록 생부에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을 부여하도록 하며, 제한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생부가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보다 간이한권리구제 절차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및 인격권 등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혼인 외 자녀가 생모의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남편 외의 자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기관이 실시한 과학적 방법으로 생부(生父)임을 입증하면 친생부인의 추정이미치지 아니하도록 함. (안 제844조제4항 신설 등).
- 나. 부부의 일방 및 생부에게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인정함(안 제846조 및 제847조).
- 다. 외관상 친생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과학적 방법으로 생부임을 입증한 자는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함(안 제854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 라. 인지의 허가청구 조항을 삭제함(안 제855조의2 삭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기관이 실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 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그 자녀의 생부(生父)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생부는 제4항의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를 위해 가정법원에 자녀에 대한 검사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846조 및 제84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46조[자녀의 친생부인(親生否認)] 부부의 일방 또는 생부는 제844 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그 자녀가 모의 남편의 친생자임 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 남편 또는 아내가 친생부인(親生否認)의소(訴)를 제기할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 ② 제844조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생부임을 입증한 자는 그 사유

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자녀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54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을 "제1항 또는"으로,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를 "제8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한다.

- ② 남편의 질병, 장기간의 별거, 사실상의 이혼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에 의한 동거(同居)의 결여 등으로 인하여 모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제844조제4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생부임을 입증한 자는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기관이 실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 결과 및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제855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친생추정 배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제844조제1항부터 제3항의 각 사유에 의해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② 제8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제844조제1항부터 제3 항의 각 사유에 의해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 한다.
- 제3조(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에 관한 특례) 생부가 이 법 시행 이전에 친생부인의 사유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제8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4조(친생부인의 허가청구의 청구기간에 관한 특례) 제854조의2제2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이전에 친생부인의 사유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시행일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 7)의2를 삭제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 7)의3을 삭제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4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9) 「민법」 제844조제5항에 따른 검사명령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4)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민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
	은 기관이 실시한 과학적 방법
	에 따른 검사 결과 남편이 아
	닌 자가 그 자녀의 생부(生父)
	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1항부
	<u>터 제3항까지의 추정이 미치지</u>
	<u>아니한다. 다만, 남편의 자녀로</u>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
	<u>하지 아니하다.</u>
<u> <신 설></u>	⑤ 생부는 제4항의 과학적 방
	법에 따른 검사를 위해 가정법
	원에 자녀에 대한 검사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第846條(子의 親生否認) 부부의	제846조[자녀의 친생부인(親生否
일방은 第844條의 境遇에 그	認)] 부부의 일방 또는 생부는
子가 親生子임을 否認하는 訴	제8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를 提起할 수 있다.	경우에 그 자녀가 모의 남편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
	<u>기할 수 있다.</u>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 친생 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 (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 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 구) ① (생 략)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정한다.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 남편 또는 아내가 친생부인(親生否 認)의 소(訴)를 제기할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 년 내에 다른 일방 또는 자녀 를 상대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 다.

② 제844조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생부임을 입증한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자녀를 상대로 하여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 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 구) ① (현행과 같음)

② 남편의 질병, 장기간의 별 거, 사실상의 이혼상태 또는 그 에 준하는 사유에 의한 동거 (同居)의 결여 등으로 인하여 모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제844조제4항의 검사 결과에 <신 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844조제 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生父)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
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
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

따라 생부임을 입증한 자는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청구는 그 사유를안 날부터 2년 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기관이 실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른검사 결과 및 장기간의 별거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 ⑤
 제1항 또는

 ------제84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u><</u>삭 제>

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 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 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